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08
----------	------

2024년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6일 상정 ·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 관리)에 근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재위탁)

2. 주요내용

가. 사업 목적 및 목표

장기목표	-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중증합병증 발생지연 - 건강수명 증가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						
중기목표	-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 서울시민 건강수준 향상						
단기목표 ('22-'24년)	- 대사증후군 인지율 향상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사업 홍보 - 사업 대상자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 - 사업 대상자 건강수준 향상						
주요 성과 목표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결과	목표	결과	목표	결과
	연간등록 실인원	4만명	62,290명	8만명	107,473명	12만명	-
	연간등록 실인원 중 검진사후관리 등록비율	40%	37.4%	40%	36.3%	35%	-
	취약계층 등록비율	8.7%	9.7%	7.0%	9.6%	9%	-
	6개월 추구관리율	43%	43.1%	44%	61.6%	53%	-
	위험요인 2개이하 감소비율	45%	41.8%	50%	41.8%	41%	-
	전문교육과정 참여비율	87%	97.5%	93%	97.5%	93.5%	-

나. 주요위탁내용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상 집중관리 전략 제시 및 실행지원
-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 활성화
- 자치구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질 관리 강화
- 대사증후군 관리 대시민 인지도 확산 및 홍보
- 대사증후군 관리 콘텐츠 제작, 담당자 공통·지역별 교육 수행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효과 평가 및 지역자원 연계, 참여 활성화 등

다.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기간: 3년 (2025. 1. 1. ~ 2027. 12. 31.)
- 위탁방법: 공개모집 (재위탁)
- 소요예산: 508,677,000 (2025년 예상금액)
- 민간위탁 추진경위

차수	기간	수탁자	수탁방법
1차	2009.6.15.~2009.12.3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신규위탁
2차	2010.3.1.~2010.12.3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재계약
3차	2011.3.23.~2013.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4차	2013.2.11.~2016.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5차	2016.2.11.~2019.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6차	2019.2.11.~2021.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7차	2022.1.1.~2024.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현장 밀착형 상시 기술자문으로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함
- 서울시민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계획을 제공하는 사업 제공인력들의 직역별 체계화 된 전문교육을 통한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함
- 데이터베이스 통계 분석 등을 시행하여 대시민 건강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
-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만성질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지원단의 축적된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 활용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수행

- 2024. 4.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재위탁)

- 2024. 4.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4년 제3차)

- 2024. 7.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완료 (79.51점, 2024년 3차)

○ 향후계획

- 2024. 8. 부터 : 시의회 동의 및 재위탁 추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강선미 (☎ 2133 - 7594)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제7차 재위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3년) 만료 시기가 '24년 12월 말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
※ 7차 협약 재위탁(공모): '22. 1. 1. ~ '24. 12. 31. (3년)
- 지난 '24. 5월 말 경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출되었음.
- 그러나, 지난 제324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의안 심의 과정에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3항에 근거하여 필수로 제출되어야 할 사항인 성과보고서(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누락하여 심사 보류 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동 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 미만 사무로서,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종합성과평가’ 실시 대상은 아님.

- 그러나, 지난 '24. 2월 경 민간위탁 관련 총괄 부서인 ‘조직담당관’에서는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조직담당관-1682, 24. 2. 14.) 시행을 통해 동 사업과 같은 연간 사업비 ‘5억 미만 사업’의 경우도 동 규칙 제10조제2항에 근거해 ‘종합성과 평가대상’ 사무로 확대 하였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그리고 이에 동 ‘서울특별시 대사중후군 관리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24년 7월 완료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79.51점)’ 결과와 함께 이번 제326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되었음.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

- 기존 민간위탁 추진 경위

차수	기간	수탁자	수탁방법
1차	2009.6.15.~2009.12.3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신규위탁
2차	2010.3.1.~2010.12.3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재계약
3차	2011.3.23.~2013.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4차	2013.2.11.~2016.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5차	2016.2.11.~2019.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6차	2019.2.11.~2021.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7차	2022.1.1.~2024.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 민간위탁 개요

- 사무명 : 서울시 대사중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위탁유형 : 사무형
- 구분 : 재위탁 (공모)
- 위탁기간 (예정) : 3년 ('25.1.1. ~ '27.12.31.)

- 근무인원 : 계약직 6명 (단장 비상근)

- 소요예산 ('24년 기준) : 473,636천원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전체 예산은 약 34억이며, 이 중 민간위탁금이 약 4.7억임.

연 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대사증후군 관리 (민간위탁금)	○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 473,636천원 - 인건비 (단장, 상근인력6) = 269,832천원 - 운영비 = 33,240천원 - 사업비 = 119,291천원 -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 51,273천원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형 (재위탁)	공모 예정	3년 이내 ('25.1.1.~'27.12.31.)	적정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의 주요 사업 목적은 '대사증후군' 대상자*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총 5개 중 3개 이상에 해당)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에게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대사증후군 위험인자(5개): ①복부비만(허리둘레), ②높은혈압, ③높은혈당, ④ 높은 중성지방¹⁾ ⑤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HDL)²⁾

○ 그리고 이를 통해 '대사증후군' 대상자가 '암, 당뇨병, 심뇌혈관질

1) 중성지방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지방질의 하나이며, 몸 안에 축적되는 지방의 형태로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음 (출처: 대사증후군 오락프로젝트 홈페이지)

2)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은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말초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걸어 간으로 이동 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함. 이에 반해, 저밀도 지단백질(LDL)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콜레스테롤의 일부를 오히려 말초혈관 내벽에 내어주는 기능을 함. 따라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경우,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할 수 있음. (출처: 식약처)

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 그리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의료비 부담' 역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

-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리고 세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동 기관의 주된 역할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관련 전략제시, 자치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사업 질 관리, 사업 효과성 평가, 담당자 교육수행, 국민건강검진 연계와 같은 연계 관리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의 “직접 수행 기관”이라기 보다는 “기획 조정 평가 연계 교육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기관”으로 판단됨.

○ 주요 위탁 사무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상 집중관리 **전략제시** 및 **실행지원**
-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 활성화
- 자치구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질 관리 강화**
- 대사증후군 관리 **대시민 인지도 확산** 및 **홍보**
- 대사증후군 관리 **컨텐츠 제작**, 담당자 **공동·지역별 교육 수행**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효과 평가** 및 **지역자원 연계, 참여 활성화** 등

- 따라서, 동 사무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특히 ‘전문적인 의학지식, 식품영양지식 및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운동 및 식이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무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아울러, 대사증후군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암, 당뇨, 심뇌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으로 악화되어가는 ‘전초단계’에 해당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이 동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동 사무는 시민들의 생명 및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임.
- 그리고 동 사무는 법적으로도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법령상 서울특별시(시·도지사)이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라 판단됨.
 - 서울시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2026)(p.109-110) (붙임 1)에 따르면,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지속 가능한 시민건강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를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주요내용’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 운영으로 기술지원’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동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동 사무는 ‘법령’에 근거한 사무 위탁의 근거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 그리고 동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점수를 살펴보면, 동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가 75점³⁾을 상회하는 79.51점임에 따라 향후 재위탁 공모 추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8)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는 필요적으로 ‘재계약’이 배제됨. 따라서, 평가점수 75점은 ‘실제 재계약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민간위탁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기준 점수가 됨.

- 다만, 현재 동 민간위탁 사업 중 ‘홍보 콘텐츠’ (특히, 유튜브 콘텐츠)의 조회수 실적 및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 ('24. 8. 23. 기준) 최근 1달간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사증후군 오락프로젝트4’ (구독자:2,09명, 동영상 273개)의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의 대부분이 조회수 100회를 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그리고 이는 이미 동 사무에 대한 ‘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기 지적한 바 있는 사항임. 따라서, 향후 동 사무를 재위탁을 통해 추진 할 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는 ‘홍보 및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탁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예산 편성 및 계약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비중에서 ‘홍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한 고민 역시 ‘대사증후군 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동 기관의 본래 목적 및 설립 취지’를 기준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4. 4월)

<예산담당관>

○ 사업비 비중이 홍보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주된 업무가 등록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이면 이 위주로 사업비를 재구조화할 것이 요구되고, 만약에 홍보일 경우에 이게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다른 용역이나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000 위원>

○ 지금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차 올려놓은 콘텐츠들을보면 사실 활용도가 되게 낮은 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000 위원>

○ 저는 그냥 적정으로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홍보된내용들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올드하고, 이게 조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과와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https://www.youtube.com/@Seoul_Metabo_Free (대사증후군 오락프로젝트 공식 유튜브 채널)

- 이에 더해, 동 사무 위탁이 '09년부터 추진된 이래로 현재까지 '온라인(모바일, pc) 사전 예약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24.5.7. 관련 용역 계약체결 통보)에야 관련 '용역5'이 진행되고 있음.
- 아울러, '24년 7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예약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진행 인력의 퇴사로 인한 변경 사항' 공문(보건의료정책과-24453, '24.7.29.)에 따르면, '동 용역' 수행하고 있는 '총괄급' '인력'이 '퇴사'하여 인력이 변경된 사실도 있는바,
- 향후 시민들의 편리한 동 사업에 대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 용역 관련 철저한 공정관리가 앞으로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질없는'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24. 3. 6. - 제안요청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스템구축-계약일로부터 8개월
- 사업비 : 금 팔천팔백칠십삼만육천원(88,73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참여시, 방문 또는 전화로만 예약가능하여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환경) 예약 방식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약 가능 일자 등의 정보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전달되지 않음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면 작성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효율 저하
 - 지류 동의서 보관에 따른, 공간 낭비 및 관리 비용 발생
 - 연간 수 만 건의 동의서를 지류로 관리함에 따라, 보관, 유지, 파기 등 업무에 부담

붙임1 서울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2026) P.109

추진과제	② 만성질환예방·관리체계 강화
세부과제	②-1. 지속가능한 시민건강을 위한 대사증후군관리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은 서울시 사망 원인 2위(17.7%), 고혈압, 당뇨병 환자 증가로 장애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건강검진결과 매년 새로운 대사증후군 발견자는 지속 증가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대사증후군 발견율 23.0%(‘09.)→27.1%(‘17.), 남31.9%, 여 22.5% (2020 서울시민 대사증후군 한눈에 살펴보기) ○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건강보험통계연보,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혈압 진료비 2.8천억원(‘15)→3.9천억(‘20), 39.2% 증가 -당뇨병 진료비 1.8천억원(‘15)→2.9천억(‘20), 61.1% 증가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건강행태 개선 등 적절한 관리로 예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는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이실천을 통해 예방가능 (WHO, 2005) -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통한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이환 및 사망감소
과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심뇌혈관 질환 및 사망 발생위험 감소로 서울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 대사증후군 예방에 필요한 생활 속 영양과 운동 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변화 유도
대 상	○ 만 20~64세 서울시민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증후군 전문관리 센터(건강관리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및 판정 기준에 따라 12개월 동안 관리 - 검진결과에 따른 맞춤형 1:1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제공 - 군별 프로세스에 따라 재검 및 건강관리 상담, 문자 서비스(1년간), 교육프로그램 연계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 운영으로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지견 등 정보 공유, 기술자문, 자치구 모니터링 및 평가 - 성과분석 등 통계 생성으로 근거자료 제시 ○ 교육을 통한 자치구 실무자 역량강화 및 질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실무자 워크숍 및 간담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08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 관리)에 근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재위탁)

2. 주요내용

가. 사업 목적 및 목표

장기목표	-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중증합병증 발생지연 - 건강수명 증가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						
중기목표	-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 서울시민 건강수준 향상						
단기목표 ('22-'24년)	- 대사증후군 인지율 향상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사업 홍보 - 사업 대상자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 - 사업 대상자 건강수준 향상						
주요 성과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결과	목표	결과	목표	결과
	연간등록 실인원	4만명	62,290명	8만명	107,473명	12만명	-
	연간등록 실인원 중 검진사후관리 등록비율	40%	37.4%	40%	36.3%	35%	-
	취약계층 등록비율	8.7%	9.7%	7.0%	9.6%	9%	-
	6개월 추구관리율	43%	43.1%	44%	61.6%	53%	-
	위험요인 2개이하 감소비율	45%	41.8%	50%	41.8%	41%	-
전문교육과정 참여비율	87%	97.5%	93%	97.5%	93.5%	-	

나. 주요위탁내용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상 집중관리 전략 제시 및 실행지원
-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 활성화
- 자치구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질 관리 강화
- 대사증후군 관리 대시민 인지도 확산 및 홍보
- 대사증후군 관리 콘텐츠 제작, 담당자 공동·지역별 교육 수행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효과 평가 및 지역자원 연계, 참여 활성화 등

다.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기간: 3년 (2025. 1. 1. ~ 2027. 12. 31.)
- 위탁방법: 공개모집 (재위탁)
- 소요예산: 508,677,000 (2025년 예상금액)
- 민간위탁 추진경위

차수	기간	수탁자	수탁방법
1차	2009.6.15.~2009.12.3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신규위탁
2차	2010.3.1.~2010.12.3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재계약
3차	2011.3.23.~2013.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4차	2013.2.11.~2016.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5차	2016.2.11.~2019.2.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6차	2019.2.11.~2021.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7차	2022.1.1.~2024.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모)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현장 밀착형 상시 기술자문으로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함
- 서울시민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계획을 제공하는 사업 제공인력들의 지역별 체계화 된 전문교육을 통한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함

- 데이터베이스 통계 분석 등을 시행하여 대시민 건강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
-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만성질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지원단의 축적된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 활용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로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로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수행

- 2024. 4.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재위탁)

- 2024. 4.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4년 제3차)

- 2024. 7.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완료 (79.51점, 2024년 3차)

○ 향후계획

- 2024. 8. 부터 : 시의회 동의 및 재위탁 추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강선미 (☎ 2133 - 7594)